

감 사 보 고 서

본인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홀트학교의 2017. 03. 01. 부터 2018. 02. 28. 로 종결되는 2017학년도의 홀트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.

- 세입결산액 7,541,153,065원
- 세출결산액 7,468,530,494원
- 차 액 72,622,571원

2018. 2. 28.

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

감 사 홍 현 국 (서명)

감 사 최 수 열 (서명)

피감사자(입회인)의 직 교장, 성명 김 봉 환

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귀하